

2블록 분양안내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13-1번지 일원 (대전 용산지구)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46세대(특별공급 3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m,세대)

주택관리 번호	약식 전용 면적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 면적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2021850006	59㎡	59	59.9168	26.3892	86.3060	39.6461	125.9521	18	16	132		166	2024. 05
	84㎡	84A	84.9769	31.6503	116.6272	56.2280	172.8552				581	581	
		84F	84.9769	31.6503	116.6272	56.2280	172.8552	22	20	166		208	
		84B	84.9899	32.5279	117.5178	56.2368	173.7546				291	291	
합계			101,725.0238	38,818.3563	140,543.3801	67,310.3670	207,853.7471	40	36	298	872	1,246	

※ 실시설계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 (59, 84A, 84F, 84B) 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타입인 84A, 84F는 공급 유형(일반공급/특별공급)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명칭(평형 표시방법:형별 면적(㎡)X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벽체공용,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으로서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인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동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기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차인 모집공고 및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 당해주택은 별도의 분양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분양전환가격 및 조건 기준은 별도로 사업주체가 정하여 양도가능 시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이를 수용한 경우 해당조건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입시점

(단위:세대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공급유형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월 임대료 (전층)
			총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21.12.08	22.06.08	23.02.08	
59	166	특별공급	193,520,000	19,350,000	19,350,000	19,350,000	19,350,000	19,350,000	19,350,000	77,420,000	81,000
84F	208	특별공급	275,280,000	27,520,000	27,520,000	27,520,000	27,520,000	27,520,000	27,520,000	110,160,000	109,000

■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입시점

(단위:세대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공급유형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월 임대료 (전충)
			총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입주지정일	
					21.12.08	22.06.08	23.02.08	23.06.08	23.11.08		
84A	581	일반공급	313,8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125,600,000	109,000
84B	291	일반공급	313,8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125,600,000	109,000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주택형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전 임대보증금과 중도금,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 바립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가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다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외 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차임차자 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자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로) 유효합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벽사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차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신후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료료, 위약금, 불합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차관상환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특별 공급 신청 자격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청년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태아를 포함 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유형별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특별 공급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순위 110% 이하⇒ 2순위 120% 이하⇒ 3순위
고령자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만 65세 이상인 사람(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예비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공급물량의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 자격

구분	내용
일반공급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됩니다.
예비임차인	·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임차인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전여 세대는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임차인 계약 이후 전여 세대가 있는 경우 사업 주체가 입양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 공급	2021.08.04.(수) ~ 2021.08.05.(목) 08:00 ~ 17:30	인터넷접수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10만원	2021.08.10.(화)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일반 공급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이 불가(노약자, 장애인 등)할 경우 주택홍보관 방문(견본주택 접수)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일자	신청장소	비 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접수	2021.08.04.(수) ~ 2021.08.05.(목) 10:00 ~ 15:00	주택홍보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329번지 (청약신청금 없음)	-

■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주택홍보관 비치) / 본인, 배우자 서명가능 · 청약신청금 불발요(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할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대리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찰인모집공고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및 청약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1. 08. 11(수) ~ 2021.08.17(화) / 10:00 ~ 17:00	당사 분양홍보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329번지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1. 08.18(수) ~ 2021.08.23(월) / 10:00 ~ 17:00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동서류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건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6.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특별 공급 유형별	청년		○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고령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 소득관련 서류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 관계증명서
			○	2. 소득확인서류
	혼인 예정인 경우		○	1. 결혼 확인서류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신혼 부부	공동 (해당자)		○	3. 소득 관련 서류
			○	1. 임신증명서류
			○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3자 (배우자 포함)		○	3. 비사업자확인각서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2. 위임장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입차인 모집공고일(2021.07.29(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주택홍보관 방문시 청약당첨자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잔금	KEB 하나은행	145-910011-94805	우리자산신탁(주)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000000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주택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반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취하여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은 각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내에 납부되되 실 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은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중도금 미납과 및 연체료, 잔금 등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모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임대주택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저축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에 금융기관의 연체 가산율을 한한한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임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연한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임대주택의 제한),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대출 일시에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의 일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사사항이 아닙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